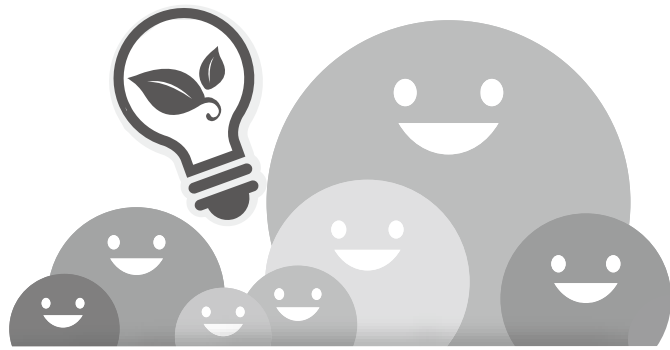


20대 국회에 바란다



2016. 6.



환경운동연합

20대 국회 7대 환경 분야 21개 과제 제안 요약



- 3 | 20대 국회 7대 환경 분야 21개 과제 제안 요약
- 5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 7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 13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19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24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29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34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40 | 짝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01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사회 만들자

실천과제		유형
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책임 규명과 징벌적 처벌 선례 확립	단기	<input type="checkbox"/> 청문회 등 추진
②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정비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중기	<input type="checkbox"/> 입법 추진
③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중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상임위		담당
환경노동위원회 / 보건복지위 / 산업통상자원위		화학물질TF/환경보건 시민센터

02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실천과제		유형
①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및 시민건강피해 최소화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
②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방안 마련	중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③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상임위		담당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국토교통위		서울 환경연합 / 에너지팀

03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실천과제		유형
①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내용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②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단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③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단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상임위		담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미래창조과학위원회		탈핵팀

04 낮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실천과제	유형	
①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②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장기	<input type="checkbox"/> 입법 추진
③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단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상임위	담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에너지 기후팀	

05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실천과제	유형	
①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②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단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③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중장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개정
상임위	담당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생태보전팀	

06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실천과제	유형	
①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단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사 등 공론화
② 수명지남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단기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 폐지 및 개정
③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중기	<input type="checkbox"/> 입법 추진
상임위	담당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물하천팀	

08 짝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실천과제	유형	
①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②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중기	<input type="checkbox"/> 입법 추진
③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중기	<input type="checkbox"/> 국정 감시(정책 전환)
상임위	담당	
국토교통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생태보전팀 / 바다위원회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I.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 1) 가습기 살균제 사고 책임의 규명과 징벌적 처벌 선례 확립
- 2)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의 정비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II.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및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 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방안 마련
-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III.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VI. 낮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V.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2) 수도권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VI.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2) 수명지남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VII.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 1) 가습기 살균제 사고 책임의 규명과 징벌적 처벌 선례 확립
- 2)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의 정비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 1994년 개발되고, 2000년 경 부터 사용이 본격화 돼 2011년 판매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266명을 포함해 1838명이 신고되었음(환경보건센터. 정부가 현재 확인한 피해자는 사망 146명 등 530명). 통계적으로 추정할 경우 피해자 범위는 훨씬 커질 예정임.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원료물질(PHMG, PGH, CMIT, MIT)의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 판매되어 발생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임.
- 정부는 제품 허가, KC 인증마크 승인, 사고 원인 규명, 피해 구제, 사고 수습 등 각 단계에서 부실함을 노출하였음. 정부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사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가 허술하였음을 극적으로 확인시켜주었음.
- 사고 원인이 밝혀진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가해 기업들은 청부연구로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로펌을 고용해 사고 원인을 물 타기 하는 등 원인 규명을 방해함.
- 2016년 4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사회이슈가 되었으며, PHMG와 PGH 원료를 사용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 등 12명이 구속되었음. 시민소비자환경단체들은 옥시불매 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조직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여야가 청문회 개최 등이 논의 중임.
-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CMIT/MIT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에 대해 착수되지 않은 상태임.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 원료와 폐손상의 관계를 동물실험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때문인데,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2)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끊이지 않는 화학물질 사고

-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9.27.)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사고로 국민 불안은 증가함. 2007년 16건의 불과했던 화학물질 사고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104건에 달했음.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년 평균 9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음. 산업단지 등 화학물질 시설이 노후하였음에도 시설유지보수 등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원청업체는 관리예산 절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물론 자칫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69종 선정, 화학사고 주관부서 일원화 등 일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였음. 그러나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를 암적 존재이며 물에 모두 빠뜨려서 건질 것만 건져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도 전에 간소화 방안과 예외조항 확대 등으로 적용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강화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음.

-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앞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정부의 힘만으로는 기업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여서 주민이 직접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의 관리기본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신속한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실질적인 사고예방이 안됨.

3) 주변에 넘쳐 나는 독성정보도 모르는 화학물질

- 전 세계적으로 12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매년 2천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음.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만 4천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여 종 씩 증가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1995년 생산량 대비 2020년까지 최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화학물질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화학물질 상당수가 독성정보가 채 파악되지 않고 사용되면서 건강과 환경피해 역시 증가했음. 이에 따라 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 등록토록 한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2007. 6)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강화했고 한국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2013년 제정했음. 그러나 이후 지속된 기업의 저항과 정부의 비협조로, 화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학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치로 전락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라고 함. 생물체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금지를 위해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었음. 2009년과 2015년, 기존 오염물질에 이 외에 브롬화난연제와 과불화합물 등 신규물질 11종이 협약대상물질로 추가 등재되었음. 문제는 새로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각종 가구, 가죽, 섬유, 종이, 전자제품 등에 난연제나 코팅제로 많이 쓰이는 상업용 물질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국 정부도 2007년 스톡홀름협약 비준 이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하

여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실행 중에 있으나 신규물질에 대한 사용실태 및 함유폐기물 모니터링이나 위해성평가 등 기초조사 조차 부족한 상황임. 기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 역시 대체물질 개발과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보다 자발적협약 체결로 대체하는 등 산업계 눈치를 보고 있었음.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 2)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정비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 3) 영유아 등 생물학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1)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징벌적 처벌

- 사고의 심각성과 사고 수습 과정의 혼란을 감안할 때, 가해 기업들의 부도덕과 반사회성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함. 특히 시간을 끌면서 증거와 증인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기업들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범죄 입증을 둘러싼 비효율을 제거해야 함. 따라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처벌,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함.
- 정부가 제품 허가, 정부인증마크(KC) 승인, 사고 원인 규명, 피해 구제, 사고 수습 등에서 보여 준 정부실패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 등을 통해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해야함.
- 한국의 환경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1991년 두산 페놀 사고>는 대구지방 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을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 이번 사고는 페놀 사고보다 더 원시적이고 수 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가혹한 처벌을 추진해야함.

2)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개혁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 독성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의 즉각적인 시장 퇴출과 진입 금지 조치 시행, 소비자 생활용품 중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퇴출을 목표(No data, NO market)로 하는 구체적인 시간표 제시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사뿐만 아니

라, 살생제품들을 포함해서 스프레이 제품 등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필요.

-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고, 제품에 전성분을 표시케 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
- 화학물질 제품의 관리와 감시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을 정비하고 부처들의 역할 조정 필요. 유럽의 경우처럼 화학물질관리청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특히 살생물제에 대한 특별 관리를 위해 유럽의 경우처럼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 공간 중 인체위해성과 관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환경보건법 관할로 통폐합 필요. 또한 어린이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현황 진단과 함께 개선 목표와 계획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백서 발간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인조트랙 공사 관련 부실시공 사태의 책임규명과 함께 학교보건 관리업무의 책임을 교육부에서 환경부로 전면이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프탈레이트 6종 중 3종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사용금지 시키고 있고, 3종은 표시만 하고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이는 국내 화학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어린이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임. 현황 파악과 함께, 프탈레이트의 전면적인 사용 금지 추진 필요
- 학교,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같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사용하는 바닥재를 포함한 건축 자재는 물론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조치 추진
- 브롬화난연제와 과불화합물 등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초조사와 제도 정비 이전에 취약계층이 영유아와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어린이집, 키즈카페, 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금지



- 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및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 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방안 마련
-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및 국민 불안 증가

-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3년부터는 기상 및 국내외 영향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황사, 스모그 등 국외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국내 유입량 증가와 확산지연, 국내 산업시설과 차량운행 등이 주요한 원인. 오염물질 배출량이 단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등으로 최근 3년간 고농도 일수 증가.
- 국내 미세먼지 농도별 현황은 공장과 차량운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높고, 지역별·계절별·배출원별 특성에 따라 농도가 다름. 제철과 석유화학단지, 석탄 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강원, 전남, 충남지역을 비롯해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과 항만 등 비도로오염원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편서풍 영향이 큰 계절인 겨울과 봄에 영향이 큼.
- 최근 미세먼지와 질환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등을 유발시키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됨. WHO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수가 2012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별 사망자 수/ 700만 명: 협심증 252만9,700명(36%), 뇌졸중 229만600명(33%), 만성폐쇄성폐질환 118만7,900명(17%), 급성폐질환 59만7,000명(8%), 폐암 44만3,100명(6%)]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불안, 정부 불신이 가중되는 추세

2)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 화력발전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물질(NOx)과 먼지를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2013년 대기오염배출량통계(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가 가장 많고(51%),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65%)을 가장 많이 배출.
-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 황산화물 배출의 가장 많은 비중(29%) 차지.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는 53기(26,273MW)가 운영 중이고 11기(9,764MW)가 건설 중인 심각한 상황. 이에 더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9기가 추가 증설될 계획.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의 석

3) 전국적인 측정망 확충 및 권역별 특별관리 대책 마련

- 전국적으로 대기측정망의 부족과 운영부실도 문제.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 대기측정망이 전국 97개 시·군 총 506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전국기초단체 226곳 중 69곳에 대기측정망이 없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음. 대기측정망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설치지역선정, 설치 시 기준높이의 적정성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함. 대기오염의 정확한 예측과 예·경보제 운영으로 사회혼란과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측정망의 정비도 필요.
- 우리나라는 1995년 미세먼지(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대기환경기준의 정책적인 목표가 대기오염원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있다면 제도를 강화하고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해야 함. 지역별 대기오염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수립, 지속적인 이행성과 모니터링도 중요.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및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방안 마련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및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 대기측정망 전국적 확대
 - ▶ 석탄화력발전소 등 주요오염원을 고려한 적정지역 설치로 예보정확도 높여야
- 지역별·배출원별 통계를 명확히 산정하여 권역별로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세먼지 2차생성에 관여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함.
 - ▶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26%).
- 고동도시 차량부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시민건강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배출원 조사 및 특별 대책 마련
- 미세먼지 고농도시 지역별 긴급대책을 마련해 법제화
 - ▶ 차량부제 실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같은 대책을 지역별로 마련해야 함.

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방안 마련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이 참여하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 마련.
- 경유세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야 함.
 - ▶ 늦어도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할 때 반영되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 삭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존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취소 등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함.
 - ▶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16.6.3)에서 저공해경유차 인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이는 신규 등록차량에 해당함. 기존 저공해경유차는 휘발유 등 다른 차량에 비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해야 함.
 - ▶ LPG 가격상승으로 택시업계 불만이 고조되자 연료선택권을 넓혀 기름값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연간 1만대, 리터당 345.54원)를 2005년 9월 시행하였으나 제작사가 기준에 맞는 경유택시를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운행 경유차에 관한 질소산화물 관리 방안 마련.
 - ▶ 현재 제작(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 실내인증기준이 있음. 실제 주행시에는 제도적으로 배출 기준이 없음.
 - ▶ 이에 따라 2017년 9월 신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차 실도로인증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임.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월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차 실도로인증기준이 없어, 관리할 방법이 없음.
 - ▶ 현재 경유차 정기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없음. 질소산화물 측정장비 및 과다배출단속장비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과다배출 차종에 대한 개선 및 제재 방안 마련.
- 나홀로 자동차 감축,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교통수요관리강화를 통한 도심 내 대기환경 획기적 개선 필요.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검토해서 도입 필요.
 -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되어 2015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음.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증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함. 이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해야 할 것임.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대체연료 사용 법

제화.

-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및 주민 피해지원 및 이주방안 마련.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독립

현황과 문제점

1) 원전축소와 탈핵은 세계적 흐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핵을 선택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의 건설 중단 결정.
-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한국의 원전 개수는 후쿠시마사고 이전 21기에서 25기로 증가. 원전을 늘려나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원전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음.

2) 원전공화국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원전마피아와 원전비리

- 2013년 6월 21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2년 5개월간 모두 106건(약식재판 제외)에 대한 원전 비리 재판 분석 결과.(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재까지 160명(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재판에 넘겨져 68명이 실형 선고.
-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253년9개월이다. 벌금은 54억8400만원, 추징금은 48억9400만원. 이들의 범죄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는 1,939억3000만원으로 추산. 폐쇄적인 운영과 회전문 인사, 원자력발전 중심의 진흥정책 등이 이러한 대규모 비리를 양산해왔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운영 중이지만, 엄격하게 진흥부처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한계.

3) 원전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

-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회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됨.
-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 생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서도 암 발생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소변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사례 보고. 현재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의 548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피해 소송 진행 중.
-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삼척 85%, 영덕 91.7%)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

정고시를 취소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원전 등 대형발전소 건설로 인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은 밀양과 청도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야기.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지역공동체의 파괴 문제 발생.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 2) 원자력발전, 초고압송전탑 등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 3) 원전안전 확보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마련. 이를 위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탈핵에너지전환 중장기 로드맵과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안전 문제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고,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안전성 논란 끝에 표결로 강행 처리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현재 2,167명의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참여한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취소 및 폐쇄해야함. 설계수명을 넘겨 원전 가동 금지토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필요함.
-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 신규원전 추진 중단이 필요함.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수급상황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소

필요.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 심의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반경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한 부지에 7기가 건설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단지임.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의 위험과 대비평가 없이 건설허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영덕 삼척 지역에 신규발전소를 강행하고 있음.

는 구조를 상임위원회를 늘려 심의 중심으로 개혁하며, 원안위의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 사유와 자격 강화 동시에 적정 인사의 연임 규정 도입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의 편향성과 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구성 비율을 도입하는 등 합리화 노력 필요(현재는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임)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원자력발전소 신규 예정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의 경우, 주민의 다수가 원전유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반대 의사를 확인함.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년 째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
- 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은 전력공급의 측면에서만 추진되어서는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음.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먼저 추진되고, 이를 위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이 강요되는 문제 개선 필요.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수립 시 형식적인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진행.
-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법이 필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원의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과약은 물론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원자력발전 주요 운영국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의 사례처럼,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 현재 원안위의 정부 중심 구조(9명 중 정부추천 5명)를 국회 중심으로(국회 추천 6명) 개편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위원 중심으로(비상임은 9명 중 7명) 구성돼 자문 기능에 머무르

넓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 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3.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

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16.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 재도입
-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제고와 법제화
-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 중단 및 청정 사업 공적 투자 확대.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 완화.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 화력발전예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2) 수도권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현황과 문제점

1) 독 터진 환경규제, 개발의 전령이 된 케이블카

- 이명박 정부부터 속도를 낸 환경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들어 더욱 가속됨.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의 실패 등에 따라 정부의 환경정책은 규제 완화와 토목 개발이 주요 방향이 되고 있음. 이는 국토 정책에서 두 가지 흐름 즉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엄격히 보전되던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시 내부 또는 주변의 생활 보전을 위해 보호하던 녹지에 대한 전용과 훼손으로 나타남.
-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임. 하지만 2012년, 2013년 부결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2014년 10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돼,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됨. 설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무모하게 진행되면서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32개 지역에서 유사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후 케이블카는 지역 난개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음.

2) 수도권 과밀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수도권 규제완화

-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3%, 제조업의 56.9%(2010년)가 집중되어 있음. 이는 일본 도쿄 33.2%, 프랑스 파리 18.1%, 런던 12.4%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 간 도로와 7대도시의 도로상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28조 5천억 원에 달하며(2010년), 이는 GDP의 2.43% 규모에 해당. 특히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전체의 60% 이상임.
- 지난 18일 박근혜대통령은 개발 수요가 있는 그린벨트 233.5km²를 2년 동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중 수도권인 경기도는 49.5km²(여의도 면적의 17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할 수 없는 면적들이 2020년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도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3) 생물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노력

-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이치 타겟(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17%,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함.(현재 한국은 육지 10.1%, 육지 1.2% 수준)
- 최근 50년 동안 산림 670만ha에서 636만ha로, 농지는 230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감소.

- 국내 생물은 4만1천여 종('13)인데, 멸종위기종의 지속적인 증가('05) 221종→('12) 246종)와 생물종 서식지의 감소 그리고 외래종 침입과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이 커지고 있음.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관한 개발 계획 금지
- 2) 도시의 통합적 재생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 3) 보호지역을 통한 건강한 지역생태계 회복

1)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국가가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평가, 감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함. 자금처럼 마구잡이식의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규제부서들이 이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
-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하는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개발의 방아쇠가 될 것이며, 국립공원이 무너지면 다른 분야들에서의 각종 개발들도 난립하게 될 것임. 따라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추진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함. 예를 들어, 사업 추진 측에서 계획서에 포함치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재심의해야함.
- 실무적으로도,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제시한 7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이들 조건 충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또한 19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환노위와 교문위 위원의 요청으로 정부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운

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이 모두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의 집행을 강제해야함.(사업 추진측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국회 환노위와 시민단체 등으로 별도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요망)

2) 수도권 지역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 도시계획 체계를 양적개발 및 도시성장 중심에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로 전환함에 따라 도시 녹지 확대,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와 농지 보호, 신규 도시 개발의 억제와 구도심의 재생 등의 방향으로 녹지총량을 유지함.
- ‘영국의 도시계획 방침(2012)’은 도심활성화, 지속가능한 교통, 고품질 주택의 폭넓은 선택, 그린벨트보호, 역사자원 및 환경의 보호 교외지역의 경제적 번영 등으로 구성. 프랑스의 국가도시정책의 경우에도 도시사회통합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사회통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수도권의 팽창과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광역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신규토지수요에 대해서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수정 보완함.
- 수도권 녹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린벨트의 보호, 도시 외곽지역 녹지와 농지에 대한 보전, 개발 사업 시 대체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 총량제를 유지해야 함. 또한 그린벨트 실질적인 녹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나 매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 지역·계층 간 접근성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자체의 학교·마을숲 조성, 옥상·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자투리땅 녹화 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도시농업 등을 지원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일몰제)’에 따른 대규모 도시 공원의 해제를 앞두고, 도시 녹지의 총량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3)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의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설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함.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모두 국제기준(IUCN 2등급 이상)에 부합토록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전을 통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과 공원관리를 차별화함.
- 백두대간·습지·하천·토양 및 생태가치와 효용을 상실한 도로와 연안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보전 및 복원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을 세워야 함. 생물(유전)자원 정보 관리 지원 및 신규 생물자원 발굴. 생물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립공원 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통제가 필요함.
-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합의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을 실행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 작성 등을 구체화해야 함.
-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며, 연구·교육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만을 허용하는 절대보전구역(No Take Zone) 지정을 검토해야 함. 또한 국립공원 주변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백두대간과 주요 산지형 국립공원 정상부(중주능선)의 경우 탐방예약제 시행 등 민감한 지역의 보호대책을 마련함.
- 백두대간·습지·하천·토양 및 생태가치와 효용을 상실한 도로·연안 복원하고, 부처별 중복 지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1) 수자원 과잉 개발, 이제는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돌아와

- 한국은 18,700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58,000km의 하천 3.5km마다 댐이 건설되어 있다는 의미임.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 숫자만도 1,3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는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대형댐 밀도 세계 1위에 해당함. 제방도 약 40,000km에 달해, 전체 하천의 3/4 이상이 제방 안에 갇힌 상태. 수도관망은 16만km, 하수관거는 12만km. 정수시설은 하루 3,800만 톤으로 국민 모두에게 하루에 실제 사용량의 3배에 가까운 0.7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임.
- 한국의 물 관련 시설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잉 개발 상태임. 이미 90년대에 포화상태에 달했고 지속적인 개발은 불필요한 환경 파괴와 예산의 낭비로 갈등을 야기함. 평화의 댐 건설, 동강댐 추진, 시화호 매립, 한탄강댐 등 논란이 됐던 시설들의 효용은 물론이고, 백해무익이라고 할 정도로 쓰임새가 없는 4대강 사업은 '통제되지 않는 개발'의 상징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4년이 지나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늘어난 시설만큼 늘어난 관리예산과 갈등임.

2) 브레이크 없는 하천 개발,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도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은 16개의 보(淤)를 건설하고, 5억 3천만㎡의 모래를 준설했음. 이러한 하천 개조의 결과 하천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사막화됨. 2012년 여름을 기점으로 심각해진 녹조는 2015년부터는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심지어 겨울녹조가 관찰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금강과 낙동강에서는 60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강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사태 해결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음. 오히려 '마지막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영주댐,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지류 정비사업 그리고 친수구역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음.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주보 하류 ~ 보령댐 도수로 공사비가 625억 원임을 감안하면, 10억 톤을 상류에 보내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총 10조가 지출될 예정임. 고삐 풀린 개발에 대해 최소한의 제동 장치도 없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도 매년 3,0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

3) 관료들이 독점한 물 정책, 시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물 관리

- 한국의 물 정책은 국토부, 환경부 등 7개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의 법정 계획 하에 일관

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물정책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소통이나 조율을 위한 체계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들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국토부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지난 해 여름 가뭄 발생 시 책임 부서도 없었고, 총괄부서도 없었음). 이 많은 법률들은 기형적인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하고 있음.

· 중앙 부처의 단편화된 행정은 시민들과 지자체가 필요한 현장의 조치 대신 불필요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유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수돗물 정수장의 경우 공급능력의 절반만 가동하고 있으며, 그나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시민은 겨우 2%에 불과한 상황임.

4)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댐들이 방치된 상황

- 전국에 건설된 댐들은 하천생태통로 차단, 수질악화, 수변 생물서식처 악화, 하천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들 중 50~150개가 매년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방식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철거되고 있음.
-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함. 미국에서는 댐이 하천생태계와 인간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2013년 한 해 동안만 51개, 총 1,150개의 댐을 철거함. 국내에서도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태화강, 곡릉천, 안양천 등에서 보(淤)를 철거한 사례가 있음.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규명
- 2) 물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효율성 제고
- 3) 노후하고 용도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4대강 사업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관과 개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4대강은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여름철 심각한 녹조현상이 겨울까지 이어지는 등 4계절 녹조가 현실화되고 있음. 수질악화와 더불어 큰뺨이끼 벌레, 물고기집단폐사, 기생충 창궐 등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¹⁾의 통과 추진.
- 4대강사업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매년 지원하는 4대강 사업비 이자 3,000여억 원, 역시 수자원공사를 지원하는 경인운하 매년 900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매년 2천억 원 등 문제 예산을 삭감해야 함.
-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천 개발, 도수로 공사 등 4대강 용수 활용 계획은 경제성 부족, 환경영향의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 절차를 거칠 경우 추진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들 기획하는 부처에 정상적인 행정절차(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함. 또한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이 내성천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므로 홍수전용댐으로의 용도 변경을 주요하게 검토해야 함.
- 4대강사업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사업 총 1,12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년 약 7천억원 등 예산을 삭감해야 함.

¹⁾ 홍영표, 장하나, 심상정 각 대표 발의. 4대강 검증 및 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의 제한 등 내용 포함.

-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자체의 막개발 난개발을 위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첫분양이 34%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사업효과도 미지수임. 따라서 불필요한 특혜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위 법률의 폐지가 바람직함.

- 유역별로도 지자체, 전문가, 지역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유역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하며, 유역위원회는 지역의 수요, 공급, 수질, 생태, 이용 등을 조율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토록 계획하고 관리하게 함.

2) 수명지남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전국에는 18000개의 댐이 있으며, 이 가운데 54.2%인 9554개가 1945년 이전에 건설됐음. 이 중 대부분은 행정에서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임.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가운데 31%가 30년 이상 된 낡은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 신규댐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조댐 건설, 댐 재개발, 치수 증대사업(보조여수로 신축) 등의 명목으로 매년 약 3~4천억 규모의 댐예산이 소요됨. 댐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합리적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함.
- 댐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항들만 다루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개정해 댐의 재평가 및 철거 관련 규정을 신설함. 이를 통해 절차, 감독기관, 복원 목표, 비용 부담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강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
- 개정법에는 향후 댐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기한 및 철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댐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과 이를 심사하는 기구의 구성 등도 포함해야 함. 나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고 있는 댐, 용도를 상실한 댐을 목록화하고 연차별 철거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댐의 기능/용도의 폐기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물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물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하지만 중앙 부처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이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물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를 조율하고, 지역별 유역위원회를 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채택 수준으로 추진함.
- 우선 각 부처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앙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나, 각 기능들이 각 부처들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이들을 모두 조정할 이후에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각 부처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물위원회를 뒤 정보의 취합과 소통, 물정책의 방향과 원칙 설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 갈등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위원회에는 중앙 부처 등, 전문가, 지자체, 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이 위원장을 맡게 함.

꼭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현황과 문제점

1) 버려진 바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국가인데도, 수산자원개발, 항만개발, 연안개발 등 개발정책이 중심이고 바다생태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임. 이는 생태계의 훼손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더러, 수산업과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국가적 문제임.
-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4962.8km이며, 섬을 제외한 육지 부분의 해안선 7752.5km(52%)에서 인공 해안선은 3982.4km로 자연 해안선(3770.1km)보다 212.3km나 많음(국립해양조사원, '제1차 전국 해안선 조사'). 연안의 고밀도 이용개발(조선, 관광, 산단, 항만 및 어항 등)과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 갯벌, 천해, 산호초 등 서식지 훼손이 증가함.
- 전국 해역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II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반폐쇄성 해역(광양만, 함평연안 등)과 동해안 중부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DO)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물 오염도 역시 증가함
- 주요 해양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폐기물과 쓰레기, 갯벌오염, 방사성물질오염, 유류오염,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등임. 이로 인해 적조, 빈산소화, 백화현상 등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음.
- 부영양화물질인 총질소(TN)는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총인(TP)은 전남과 동해연안에서 증가하는 경향. 한편 산업단지가 입지한 특별관리해역(부산, 울산, 온산, 시화, 마산)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함.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이 생물체 내에서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농축되어 생태계 및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폐그물, 어구 등 '바다 쓰레기(Marine litter)'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선박운항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스티로폼부이, 비밀봉지, 플라스틱 조각, 나일론 노끈 등 양식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

2) 갇힌 갯벌

- 연안습지(갯벌)의 면적은 1987년 3,203km²에서 2013년 2,487km²로 716km² 감소(여의도 240배)했으며, 신도시 및 항만, 산업단지 개발, 해안도로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후 갯벌 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개발 속도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강행되면서 인천, 거제, 여수 등에서 대규모 해안 매립이 추진되고 있음.



-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 또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의무화 등에 따라 가로림만, 강화도 등의 조력발전소 계획으로 갯벌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3) 새만금, 화성호 등 드러나는 개발 실패

- 새만금 간척사업은 33km의 방조제를 건설해 확보한 40,100ha를 매립해 토지와 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를 개발하는 계획임. 하지만 개발도 늦어질뿐더러 용수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 토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3월 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수질 목표를 중·상류(농업용지) 4급수, 하류(도시용지) 3급수로 천명했으나, 2015년 10월 중간평가 결과 평균 5급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6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음.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서도 목표 수질 달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의 계획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화옹지구 간척 사업’은 9.81km의 방조제를 건설해 6,212ha를 매립해 1,730ha의 담수호(화성호) 등을 조성하는 계획임. 1991년 9월 시작해 2002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수질(호소 수질 IV등급)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배수 갑문을 이용한 해수 유통 실시하고 있음. 또한 화성호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해 시화간척지 남서부에 위치한 대송 농경단지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우도수로 공사를 강행 중임. 하지만 2016년 현재 여전히 목표 수질 달성은 요원하며, 추진 중인 간척지 이용계획을 현실화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임.
- 선행 사업인 시화호의 경우 결국은 담수호 계획을 포기하고, 북측 시흥공단에 연결해서는 MTV(Multi Techno Velly)를 개발했고, 남동측엔 송산그린시티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담수호를 포기한 대신 조력발전소를 설치해 해수 유통을 항구화함. 시화호의 사례는 실패한 정책의 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받음.

정책제안

정책방향과 비전



- 1) 바다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 관광 활성화
- 2) 갯벌 보호법의 제정 및 갯벌 국립공원 추진
- 3) 실패한 간척지의 해수 유통으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 균형 추진

1)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함. ‘바다를 인간만이 사용하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소중한 지구생태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생태보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할 것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고래 보호구역(동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제주), 점박이물범 보호구역(인천 및 경기)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보호구역에서는 이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시중에서는 혼획 등에 의해 획득된 사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며, 지역에서는 생태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정부가 법제를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물에 걸린 혼획 고래를 살려주는 등의 경우 소요된 비용과 격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2)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 우리나라 서해안은 해양정책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학술지(Ocean & Coastal Management, 102 PB)에서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한 곳으로 소개됨.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산악과 갯벌 그리고 인간의 먹이활동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으로서, 그 생태적 희소성과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지구적 자산임.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갯벌 보호 흐름을 역행하는 인천, 거제 등에서의 매립과 가로림만과 강화 갯벌 등에서 진행 중인 조력발전의 추진도 중단되어야 함.
-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역간척 지원법)을 지원하는 등이 필요함
- 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검토하고 지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립공원은 산악형과 해상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데도 바람직함.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 현재의 새만금 내부개발은 담수호를 전제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당장 다양한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에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담수호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고, 농·공업용수의 확보 방안, 방수제의 축조방법과 매립토의 높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방향, 국립수목원의 조성방안, 도시용지의 기반시설 조성방안 등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함. 지난 12월 제출된 새만금 중간 평가 용역 보고서를 둘러싸고도 수질변화 예측모니터링이 타당한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따라서 더 이상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회,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용역보고서를 검증하고,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플랜B(해수유통을 통한 부분 조기개발) 수립에 나서야 함.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의 포기하고 해수 유통을 항구화 한다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으로 조력 발전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 개발과 일부 갯벌 보호를 통한 서해 생태계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화성호도 지속적인 해수 유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역간척에 대한 비전과 친환경적 부지 이용 방안을 지역사회가 공유해 나가야 함. 일부를 논밭으로 활용하되, 7·8공구를 인공습지로 활용하고, 화옹방조제 앞 매항이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 관광 자원화하는 등 새로운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매항리 갯벌은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기수역 습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람사르 사이트로서의 가치도 충분한 상태임.